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498

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이헌승·이상휘·조경태

서일준 • 박덕흠 • 서범수

성일종 · 김정재 · 임이자

김기현 • 윤상현 • 최보윤

강명구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'노인의 날'로 지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'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'을 뜻하는 '노인'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'어르신'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이에 '노인의 날'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'어르신의 날'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"老人의 날"을 각각 "어르신의 날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6條(老人의 날 등) ① 老人에	제6조( <u>어르신의 날</u> 등) ①
대한 사회적 관심과 恭敬意識	
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	
日을 <u>老人의 날</u> 로, 매년 10月을	<u>어르신의 날</u>
敬老의 달로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